

1999年度
國政監查

教育委員會會議錄

(附錄)

國會事務處

被監查機關 教育部

日 時 1999年10月15日(金)

場 所 教育委員會會議室

【서면질의·답변서】

(답변서)

○教育部長官 金德中

(李源龍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 대학의 매매가 일반적 관행으로 진행되고 커미션까지 받고 있는 제도적 모순이 있으므로 매매를 양성화시키는 방안을 연구할 용의는?

(답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은 기본적으로 사회에 환원된 공익재산이므로 매매 자체를 양성화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외국의 사례나 제도는 어떠한지, 이 경우 장학재단 등의 공익법인과 의 형평성 문제 등 매우 심도있게 논의 되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대학의 이사회에 구성에서부터 힘의 균형이 맞아질 수 있는 이사회 구성에 대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하여 연구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이사회 구성을 어떻게 하라고 법률에서 제한하는 경우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아 위원님이 제의하신 내용을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의) 이사회 운영권에 대한 감사권을 학생편과 이사회편의 독립지역에 있는 교수들한테 감사권을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연구할 용의는?

(답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학운영과 관계되는 이해당사자간의 견제와 균형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분규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취지로 이해합니다만 감사권을 교수에게 주는 문제에

있어서는 교수본래의 1차적인 기능이 교육과 연구기능에 있다고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金貞淑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 한려대 사태의 책임자를 밝히고, 동교에 대한 폐쇄계고를 철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할 용의는?

(답변)

○한려대에 대한 임시이사 파견여부는 향후 동교에 대한 현지실사후 학교폐쇄조치 여부와 연계하여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한려대 학생모집정지시 고등교육법 제60조에 정해진 시정을 할 기간을 주지 않았으며, 폐쇄계고조치시 고등교육법 제63조에 정해진 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

○'98.7.31 한려대에 대한 학교폐쇄계고 및 학생모집정지 조치 이전에 동교 설립자 이흥하의 공금 횡령 구속 등으로 학내의 분규가 있어 수회에 걸쳐 학교정상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학교폐쇄계고조치시에는 고등교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朴承國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임한 박원택 이사의 이사승인을 10개월 지연시킨 이유는? 교육부가 책임질 사항이라고 보는데?

(답변)

○동 법인 김용준 이사의 임기가 '98.3.8 만료되었고, 동인의 후임으로 동 법인에서는 박원국 전 이사장의 동생인 박원택씨를 선임하여 '98.3.30 취임승인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 대학의 교수협의회 및 총학생회

에서는 동인이 박원국 전 이사장의 동생이라는 이유 등으로 동인의 이사 취임을 반대하는 민원을 제출하고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의 20여개 단체는 관선이사 파견을 요구하였으며, 교수·학생들의 시위·농성으로 학원운영이 안정적이지 못하였습니다.

- 이러한 여러 가지 당시의 정황 때문에 즉시 승인조치를 하는 것보다 시간을 가지고 사태의 추이를 관망해 가면서 이사취임을 승인하는 것이 동 학원의 안정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하였으며 고의로 지연시킬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 덕성학원이 재단사무실을 개축하면서 학교비로 23억원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 이에 대한 교육부의 처리대책은?

(답변)

- 덕성학원이 재단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운현궁 양관」은 서울특별시 문화재 사적 제257호로 지정된 건물로서 대학의 행정실 및 법인 사무국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입니다.
- 동 건물에 대한 서울시의 안전진단 결과, 위험요소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시 문화재관리국의 감독하에 '92.10.10~'99.6.30까지 보수하여 재단 사무실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 동 건물은 교육용시설로 보수를 위한 비용부담은 학교비에서 지출이 가능하나, 우선적으로 교육목적에 사용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 '97년도에 동 학교법인에서는 학교에 건축기금 적립금으로 128억원을 전출한 바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법인의 사무실을 별도 마련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동법의 취지로 보아 별도 마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학교법인이 영세하여 많은 법인이 그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하지 못하고 학생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학교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에서도 교육용시설은 교육목적에 부합되게 우선 사용케하고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시설을 사용,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하며
- 장기적으로는 학교법인의 사무실은 교육용시설

이 아닌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여 교육용시설이 타 목적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덕성학원의 비상근 이사장이 급료를 받는 것에 대한 견해는?

(답변)

- 덕성학원 정관 제18조제2항에 “상근하는 임원으로 이사장 및 이사 1인, 감사 1인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 사립학교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정관에서 정한 상근하는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 덕성학원 이사장의 학사간여에 대한 대책은?

(답변)

- 이사장이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한 학교의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학사행정에 간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 현 이사장의 학사행정 간여 여부에 대하여는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 앞으로 이사장과 총장 간의 권한과 책임 한계에 대하여 검토할 계획입니다만 이사장이 학사에 간여하는 것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시정조치에도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 사학의 분류는 법만 잘 지키고, 교수·학생 등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 해결 가능하다고 보며 교수협의회와 교무회의, 총장선출, 분류에 가담한 학생 등의 문제에 대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

-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많은 토론을 거쳐 제도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질의) 박원국 전 이사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동 법인에서 소송비용을 제공한 것을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답변)

- 동 소송에 대하여 동 법인이 이해관계인의 자격으로 보조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할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수임료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질의) 덕성여자대학교의 '교원인사조정특별위원회'의 설치에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데, 향후 교육부의 조치 계획은?

(답변)

○교원인사위원회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의거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교원인사조정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하여는 규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해 대학 내부시행세칙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기능면에서 교원인사위원회와 중복되는지 여부와 위법성 등을 심층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安商守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 그리스도신학대학의 경우 재단측은 김진건 총장의 학력을, 총장측은 원만석 총장 직무대행의 학력을 각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치하실 생각은?

(답변)

- 사립대학의 총장 임면권은 법인이사회의 고유권한이며 학력자체가 총장 임명에 있어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 총장은 사회적 권위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해 볼 때 학력위조 문제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사실일 경우 동 법인으로 하여금 엄중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장관은 지난 7월 상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문기 전 이사장을 대동하고 이상희 이사장, 김찬국 총장 등에게 대학에는 주인이 있어야 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 뒤에 장관은 사실과 조금 차이가 있다는 해명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발언을 계기로 상지대 뿐 아니라 기타 임시이사들이 파견된 대학에서 구 재단의 복귀움직임이 가속화되었습니다.

- ①장관께서는 다시 한번 그 발언의 진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②상지대학에서는 김문기 전 이사장이 복귀해야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대학에 주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대학의 경영과 발전을 책임질 경영주체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본래 의도와는 달리 와전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상지대에 김문기 전 이사장이 복귀해야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질의)
○조규철 총장(당시 교무처장) 아들 2명은 그 당시 고교성적으로는 한국의대의 해당학과에 입학할 수 없는 자녀를 당시 입학주무담당자에게 부정입학을 지시하였다는 폭로내용이 사실이라면 조사내용과 조치내용을 공개해주시고, 조사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현 조규철 총장(당시 교무처장)의 자녀 1명은 '88학년도 사학과에, 다른 1명은 같은 해 일본어과에 진학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86~'87년까지는 학력고사와 내신성적 및 논술고사를 포함한 3가지 전형요소로, '88~'93년까지는 학력고사와 내신성적에 의한 전형요소로 선발하였으며, 그 당시 학력고사는 종전 국립교육평가원에서 출제하고, 대학에서 시험 시행으로 대학이 채점하고, 그 결과도 대학이 보관하였습니다.
- 한편 대학입학전형관계 서류는 매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하는 관계로 인하여 「매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교육부 고시)」에 따라 4년(입학학생이 졸업하는 기간)이상 보관후 폐기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98년 한국의대 학내사태 내용중 동 내용이 보도된 이후에 우리 부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한 바 있으나 임시관련 서류가 폐기(증빙서: 불임)되어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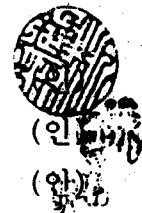
박 승 렬 선생님 귀하

국회교육위원회 김정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1988학년도 신입학 서류는
교육부 지침 및 공문서류 보존에 관한 규칙에 따라 4년 보관 후 폐기되어,
본 대학교 조규철 총장 자녀 입학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 9. 2

확인자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작성자 입학주임

박 오 이
종 영 재
평 일 명



(질의) 덕성여대 사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현 지방문조차 하지 않고 “이사장 승인취소”를 내림으로써 학내사태를 악화시킨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교육부의 인맥을 통한 로비가 있었다는데 맞습니까?

(답변)

- 덕성학원 박원국이사장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게 된 것은 우리 부 감사결과 지적된 학사행정의 제도적·관행적 간섭을 배제토록 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고 수업거부로 인한 유급사태 우려, 학생들의 농성, 교수들의 단식투쟁 등 학내 분규가 발생하여 취임승인 취소하였고,
- 이 조치로 대학이 정상화 되는 등 학내안정을 이루었습니다.
- 교육부의 인맥을 통한 로비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질의)

5. 전재욱과 관련된 그간 교육부 업무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조사할 생각은 없는지?
6. 통상적인 사학재단의 이사변경신청 처리기간이 얼마이며, 전재욱이 평택공과대학을 인수할 당시 이사변경신청이 처리된 기간은?
7. 기준에 미달하는 대학에 지원금이나 용자금 이 나가게 된 근거,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은?

(답변)

- 전재욱 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하여 조사된 바 있어 현재로서는 재조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재조사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학교법인 임원변경신청 처리기간은 정부의 ‘민원사무처리기준표’상 7일이며, 평택공과대학은 신청서 제출 당일 처리되었음.
-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학생1인당교육비, 교원확보율 등 교육여건지표에 따라 모든 전문대학에 지원하는 일반지원사업과 경쟁력 있는 우수 대학에 대해 평가를 통해 지원하는 평가지원사업이 있는 바,
-98년 경문대학에 대한 실험실습비 기자재 지원은 일반지원사업으로 지원된 것임.

(질의) 한상권 교수에 대한 재임용 탈락과정이 사립학교법에 비추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특채에 의한 재임용의 적법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한상권 교수의 재임용 탈락은 당시 이사장측은 재임용 기간만료에 따라서 탈락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본인은 학생선동 등의 이유로 부당하게 탈락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재임용기간 만료로 인하여 탈락된 만큼 관계법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 또한 특채에 의한 임용은 재임용탈락일자로서의 소급 임용이 아닌 동법에 의한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95~'96년에 걸쳐 한려대에만 6억8,0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지출되었음. 이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된 용도를 확인하였는지?
-이 돈이 한려대에 있지 않고 대평여고 기획실로 보내져 그 곳에서 관리되고 집행되는 것이 정당한 절차인지?
-도서관 지원 및 시설설비 확충에 쓰였다고 보고했으나 이게 가능한지?
-도서구입비의 경우 한려대측의 보고에는 65,000권이라고 했으나 '98.7. 교육부 조사에는 12,000권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 나머지 돈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조사한게 있는지?

(답변)

- 국고보조금을 해당대학이 아닌 대평여고 기획실에서 관리·집행되었다면 이는 정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 동 대학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은 시설·설비확충, 도서관 지원 비용 등으로 보조된 것입니다.
- 도서구입의 경우 '96년도에 9,600권을 구입하여 총 도서보유량은 65,000권으로 교육부에 보고하였으나, '98.7. 교육부 실태조사결과 12,000권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95~'96년도에 동 대학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6억8,700여만원은 전액 정산된 것으로 보고되었고, 도서구입여부를 재확인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질의) 사학진흥재단은 부실대학인 중부대학에 10억원이 넘는 돈을 용자하였는데, 용자금을 교부해 주는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

- 사학진흥기금의 용자는 대학의 신청을 받아 재

단의 용자심사위원회에서 사학육성 및 자구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점수가 높은 대학별로 용자해 주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동 대학에 용자할 당시에는 비리 등으로 교육부의 행·재정제재 대상학교가 아닌 관계로 관련 절차에 따라 교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 감사결과 및 검찰 수사결과 등을 토대로 우리 부의 제재대상학교로 선정하여 국고지원을 배제함과 아울러 재단으로 하여금 동 대학에 용자 배제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 전임 이사장이 학사행정 간섭 때문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현 이사장의 학사행정 간섭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이며 교육부는 2중의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아닌가요?

(답변)

○박원국 전 이사장은 우리 부 감사결과 지적된 학사행정의 제도적·관행적 간섭을 배제토록 한 시정조치를 이행치 못하고 학내분규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취임 승인을 취소하였습니다.

○현 이사장의 학사행정 간섭여부에 대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질의1) 덕성여대 이상신 이사는 현지 고려대학교 교수인데 현지 교수가 다른 학교 재단이사가 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답변)

○대학교수를 포함한 교원은 동인이 재직하고 있는 법인이 아닌 다른 학교의 법인이사 될 수는 있습니다.

(질의) 덕성여대 사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현지 방문조차 하지 않고 “이사장 승인취소”를 내림으로써 학내사태를 악화시킨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교육부의 인맥을 통한 로비가 있었다는 데 맞습니까?

(답변)

○덕성학원 박원국이사장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게 된 것은 우리 부 감사결과 지적된 학사행정의 제도적·관행적 간섭을 배제토록 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고 수업거부로 인한 유급사태 우려, 학생들의 농성, 교수들의 단식투쟁 등 학내분규가 발생하여 취임승인 취소하였고,

○이 조치로 대학이 정상화 되는 등 학내안정을 이루었습니다.

○교육부의 인맥을 통한 로비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질의)전임 이사장이 학사행정 간섭때문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현 이사장의 학사행정 간섭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이며 교육부는 2중의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아닌가요?

(답변)

○박원국 전 이사장은 우리 부 감사결과 지적된 학사행정의 제도적·관행적 간섭을 배제토록 한 시정조치를 이행치 못하고, 학내분규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취임승인을 취소하였습니다.

○현 이사장의 학사행정 간섭여부에 대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질의) 덕성여대의 임시이사 선임시 전문성있고 공평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답변)

○덕성여대는 현재 정이사 체제입니다.

○앞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고견을 깊이 고려하겠습니다.

(질의) 한상권 교수에 대한 재임용 탈락과정이사립학교법에 비추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특채에 의한 재임용의 적법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한상권 교수의 재임용 탈락은 당시 이사장측은 재임용 기간만료에 따라서 탈락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본인은 학생선동 등의 이유로 부당하게 탈락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재임용기간 만료로 인하여 탈락된 만큼 관계법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또한 특채에 의한 임용은 재임용탈락일자로의 소급 임용이 아닌 동법에 의한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1998.7.22 김계수 전 이사장의 별세를 계기로 교육부는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임한 박원택 이사의 승인을 10개월 고의로 지연시켜 법인운영의 정상화를 방해하였고, 한편으로는 3차례(98.12.2, 99.1.12, 99.1.30)에 걸친 계고장을 통해 학교법인의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관선이사를 파견하겠다고 하여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보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 동 법인 김용준 이사의 임기가 '98.3.8 만료되었고, 동인의 후임으로 동 법인에서는 박원국 전 이사장의 동생인 박원택씨를 선임하여 '98.3.30 취임승인 신청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동 대학의 교수협의회 및 총학생회에서는 동인이 박원국 전 이사장의 동생이라는 이유 등으로 동인의 이사 취임을 반대하는 민원을 제출하고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의 20여개 단체는 관선이사 파견을 요구하였으며, 교수·학생들의 시위·농성으로 학원운영이 안정적이지 못하였습니다.
- 이러한 여러 가지 당시의 정황 때문에 즉시 승인조치를 하는 것보다 시간을 가지고 사태의 추이를 관망해 가면서 이사취임을 승인하는 것이 동 학원의 안정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하였으며 고의로 지연시킬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 중부대학의 경우, '98년3월1일자 골프지도학과 교수로 임용된 이사장의 처남인 류시건씨를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도 하지 않고 부교수로 임용 하는 등 대학의 자체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초빙공고 내용을 무시하고 무원칙한 교수임용을 했는데, 교수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교육부의 책임은 무엇이며, 타 학교에서는 이같은 사례가 없는지, 동일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은?

(답변)

- '93~'95년 학교법인 중부학원은 교원채용과 관련하여 학교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교원 채용과정에서 동 대학이 정한 자체인사규정과 초빙공고 모집분야와 전공이 상이한 자, 자격요건 미비자 등 무원칙하게 교수를 임용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시에 지적되어,
- 교육부에서는 교원신규채용과 관련 금품수수 의혹이 있는 이사장 등 6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 교원의 임용은 전적으로 대학에 일임되어 있는 사항으로 교육부가 간여할 사항은 아니며 감사를 통하여 부당한 사실이 적발될 때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부당한 교원채용 재발방지를 위해 교원신규채용과 관련하여 교원인사의 투명성·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자체 인사규정 제정 및 절차 이행

을 강력히 촉구하고, 반복적인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종합 및 사안감사시 신규임용관련 기초심사·전공심사·면접심사의 규정 준수여부를 엄정히 감사할 방침입니다.

(李壽仁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 지난 7월29일 교육부에서 장관은 상지대 이상희 이사장, 김찬국 총장, 김문기씨를 불러 놓고 "사립대학에는 주인이 있어야 한다. 주인은 바로 설립자이므로 설립자가 맡아 운영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

- 7.29 모임은 상지대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한 각자의 입장을 청취하고 의견수렴을 하기 위하여 3자를 장관실로 초치한 모임입니다.
- 이 자리에서 주인이 바로 설립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질의) 지난 9.8 임시이사장 회동시 총장직선은 필요없다고 말한 적이 있는지?

(답변)

- 9.8 임시이사장 간담회는 장관취임 이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 임시이사장에 대하여 상견례와 함께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입니다.
- 이 자리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경위를 설명하면서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시이사장의 임기가 '99.12.31까지로 정해짐에 따른 임시이사체 운영, 그리고 그간의 개별 대학법인의 어려움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질의) 장관은 취임 이후 사립학교 정책의 토대가 되는 사립학교법을 제대로 읽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

○ 사립학교법의 어느 조항에 설립자가 사립대학의 주인이라고 되어 있는지, 그 근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장관취임 이후 결재시 사립학교의 운영, 회계, 임시이사 선임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사립학교법 관련규정을 읽고 이해하여 왔으며
- 사립학교법에 설립자가 주인이라는 조항이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질의) 김문기씨가 교육부를 상대로 「이사취임 승인 취소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가 서울고법에 이어 대법원에서 지난 6월11일 최종적으로 패소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

○사학분규 관련보고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질의) 장관이 '설립자', '주인' 운운하며 법에 배치되는 언동으로 교육계를 대혼란시킨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실 것인가?

(답변)

○학교법인은 사회에 환원된 공익재산이므로 개인 소유의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김문기씨가 엄청난 불법비리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법적으로 상지 학원과 아무 관계가 없고, 관선이사를 통해 발전하고 있는 상지대에 분규를 조장하려 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

○김문기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사실은 사학 분규와 관련하여 보고를 통하여 알고 있었으며 임원취임승인취소를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으로 현재 상지학원과 관계가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동인이 법인운영에 복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해 듣고 있습니다.

(질의) 지난 7월30일 강원대 방문시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사장, 총장과의 "3자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선이사를 다시 파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 것과 관련하여

○이 발언의 사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선임한 상지학원 현 이사장의 권리와 역할을 교육부장관이 스스로 부정하고, 아무 법적 권한도 없는 증인 김문기와 현 이사장과 총장의 3자대화를 강요하는 듯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 장관님의 선을 넘은 언동이고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는지?

(답변)

○상지대가 학내구성원을 포함한 지역사회, 이해관계인 등의 원만한 협의에 의해 정이사체제로 전환시키지 못할 경우 현 임시이사의 임기가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99.12.31 종료되므로 다시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개정사립학교법 내용을 말한 것일 뿐 김문기 전 이사장과의 대화를 강요한 것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상지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장관은 어떤 과정을 통해 현 이사장과 총장 그리고 김문기씨와 회동을 하게 되었는지, 장관님이 발의한 것이지, 아니면 부하 직원들의 건의에 의해서 했다면 하부선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인지?

○7월29일 상지대관련 3자회동과 관계있는 주무사무관, 과장, 국장의 명단을 밝히고 기안자가 누구인지 밝혀라?

(답변)

○장관취임 후 상지학원 및 상지대 관련민원이 계속 접수되어 7.14~15 담당직원을 현지 출장시켜 상지대 운영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결과 현 임시이사체제의 유지를 희망하는 교수협의회 등의 집행부측과 김문기 전 이사장의 즉각적인 학교 복구를 희망하는 김문기 전 이사장 지지측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본인이 직접 상지대 정상화에 대한 임시이사장, 총장, 전 이사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초치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본인은 3자의 의견을 청취 하였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발전해야 됨을 강조하였으며 교수는 강의와 연구에, 학생은 학문탐구에 각각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질의) 7월29일의 3자회동 결과가 신문에 보도되자 청와대로부터 질책을 받고, 그 경위를 묻자 담당국장 등 부하직원이 제대로 보고를 하지 못해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한 적이 있는가?

(답변)

○부하직원이 제대로 보고를 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질의)

○천만원을 수수한 김용현 국장이 3개월뒤에 돌려줬다는 이유 하나로 파면시키지 않고, 의원면직 처리한 이유는?

(답변)

○김용현 국장이 금품을 받은 뒤 바로 돌려주려 하였으나, 금품을 제공한 당사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3개월뒤에 전신환으로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는 본인의 소명을 고려하고,

○김용현 국장을 징계 조치하는 경우 최소 2~3개월이 소요되므로 당시 김용현 국장이 담당하고

있던 BK21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본인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 대구미래대학을 한 건설회사가 인수하려고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동 회사 총수 자녀 3명이 교수로 채용되어 실력자로서 행세하고 있다는데 그 사실확인 요망.
대구 미래대학에 즉각 관선이사를 파견해야 좋다고 생각하는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답변)

- '99.6. 대구지역 지방언론에 대구미래대학을 경일건설이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해당법인에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였는바 보도내용은 사실무근임을 확인하였음.
- 동 대학의 교원임용보고자료와 대학에 확인한바 '99.3. 경일건설 사장의 장남과 3남이 전임강사로 채용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 대구미래대학의 현 상황은 관련법령상 임시이사 선임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현 단계에서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는 없음.
- * 사립학교법 제25조 (임시이사의 선임)
-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당해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선임.

(질의) 교원징계재심위원장 김성동과 박승준 전 이사와 유착관계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제출 바람.

(답변)

-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김성동 교원징계재심위원장 본인은 아래와 같이 소명하였습니다.
-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 위원장 김성동은 '87년도 한국의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사교육론을 강의한 것을 계기로 당시 박필수 총장과 박승준 이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승준 이사의 어머니 99세 백수연에 초청된 200여명 중 하객의 한 사람으로서 참석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 한국의국어대학교 학내사태 발단 및 진행 당시 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으며, 또한 한국의대문제에 개입한 적도 없습니다.
- 김성동은 '99.10.2자로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위원

장으로 부임하여 '99.10.4에 한국의국어대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건을 다루었는 바, 이와 관련하여 혹시 관계자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어 소명합니다.

-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기관으로서 현재 변호사, 법과 대학교수, 교사 출신자, 사립학교법인 대표, 언론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다양한 시각을 가진 위 위원들이 합의에 의하여 재심사건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 또한 현 위원장 부임 이전에 위원회는 한국의국어대학교 학내사태와 관련된 최소회 교수의 '99.5.20자 파면처분에 대하여 학내분규 과정에서 조규철을 지지하는 반대편에 섰다는 이유로 징계처분되었는 바, 반대편 입장에서 활동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고, 또한 반대편 입장에서 활동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학교혼란 상황에 비추어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하여 '99.6.28. 위원 전원의 합의로 취소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 그리고 '99.10.4. 한국의국어대학교 사태와 관련된 서재명 교수 등 13명의 사건도 같은 시각에서 위원들이 전원 합의에 의하여 학내사태와 관련된 징계처분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하였습니다.
- 따라서 위원회의 합의제 성격과 현 위원장 부임 이전에 이미 유사한 건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현 위원장이 이번 결정에 대하여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소명하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인과 박승준 전 이사와의 관계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나 하고 김성동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징계재심위원회 위원명단

직명	성명	생년월일	경력	임기
위원장	김성동	'42.1.14	○'97.8. 교육부 기획관리실장	1999.9.21~2002.9.20
상임위원	김성덕	'40.2.16	○'98.4. 경북대 사무국장	1998.9.21~2001.8.31
위원	조용락	'31.4.19	○'79~'81 수원, 인천, 서울남부지청장 ○'84.4 변호사 개업	1997.7.21~2000.7.20
위원	양승두	'34.12.18	○'86~국가보훈처행정심판위원, 연세대 법 대교수(행정법)	1997.7.21~2000.7.20
위원	한상국	'36.12.10	○'74.9~서울여상 교장	1997.7.21~2000.7.20
위원	한천수	'52.8.9	○'98.10.~중앙일보사회부장, 사장비서실	1998.12.5~2001.12.4
위원	유시춘	'50.5.12	○'72.3~'85.8. 장훈고 교수 ○'95~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	1998.12.5~2001.12.4

(질의) 김효겸 대학행정지원과장에게 장건 한국외대 노조위원장과의 면담을 지시한 적이 있는지와 이 자리에서 변형윤 이사장을 교체할 의향이 있다는 느낌의 발언을 한 적이 있는 지?

(답변)
○'98.8. 임시이사 선임이래 한국의국어대학교의 분규가 해결되기 보다는 교수협의회 및 조규철 총장을 중심으로 한 측과 서재명 교수 및 구 재 단측과의 극명한 갈등이 노출되었고, 특히 '98년 10월 교수 19명 직원 70명을 해임 또는 정직 등 징계 조치한 것에 대하여 교원징계재심위원회 및 중앙 노동위원회 등이 절차미비 등의 이유로 기각시켰으며, 그 후 교수 18명, 직원 15명을 재 차 해임 및 정직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다수민원이 접수되는 등 여론이 좋지 않아 학교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분위기를 파악 하기 위해서 '99년7월말에서 8월초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듣도록 지시했습니다.
○담당과장은 이 자리에서 변형윤 이사장의 교체 와 관련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질의) 학교법인 하남학원 광주예술학교운영과 관련한 감사원 위탁민원 사안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자 현황
○조사결과보고서 결재자 현황

○위원님께서 '99.10.15 서면으로 답변 요구하신 자 료입니다.

○조사자 현황 : 총 5명

소속	직위(직급)	성명	현 소속		비고
			직	부서	
감사관실	조사담당관(서기관)	이지현	부이사관	제주대학교 사무국장(직무대리)	반장
"	교육행정사무관	이장길	서기관	공보관실	
"	교육연구사	박제윤	교육연구사	교육평가팀	
"	교육행정주사	신강탁	교육행정사무관	평생학습정책과	
"	교육행정주사	박운성	교육행정사무관	기획예산담당관실	

○조사보고서 결재자 현황

- 기안자 : 사정담당관 서기관 이지현
- 검토결재자 : 감사담당관 부이사관 김연수
- 최종결재자 : 차관 이영탁

(질의) <한려대 등 관련 교육부에 대해>

○1998년8월26일 한국일보와 MBC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한려대 등 4개 대학과 관련한 교육부 자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 4개 대학과 관련하여 업무처리과정의 내용과 업무처리 담당자에 대해 이해찬장관에게 구두로 보고 한 바 있으나, 서류로 보관된 것은 없습니다.

(질의) 이홍하에게 4개대학뿐만 아니라, 서남대의대, 서남대 아산분교, 안산산업대 등 7개학교를 인가해 준 과정과 결재명단을 제출바람

(답변)

1. 서남대학교(학교법인 서남학원)

- 설립 인·허가 경위
 - '88.12.20 학교설립계획 승인
 - '88.12.31 학교법인 설립 허가
 - '90.11.28 대학설립 인가
 - '91.3.1 개 교
- 대학설립 인가 결재자

담당자	과 장	심의관	실 장	차 관	장 관
이영찬	정형진	송봉섭	이천수	조규향	오병문

2. 서남대학교 공대 이전(충남 아산)

- 이전계획 승인
 - '96.4.8 서남대 공학계열 이전계획 승인
- 이전계획 승인 결재자

담당자	과 장	심의관	국장(전결)	차 관	장 관
맹정호	김영식	조성중	이원우	-	-

3. 광주예술대학교(학교법인 하남학원)

- 설립 인·허가 경위
 - '92.1.8 학교법인 설립허가(하남예술학교)
 - '96.10.26 정관변경 인가
 - '96.12.11 대학설립 인가(2년제 각종학교에 서 개편)
 - '97.3.1 개 교
- 대학설립인가 결재자

담당자	과 장	심의관	국 장	차 관	장 관
맹정호	정석구	조성중	장오현	이영탁	안병영

4. 한려대학교(학교법인 서호학원)

- 설립 인·허가 경위
 - '93.12.28 학교법인 설립허가
 - '94.12.3 대학설립 인가
 - '95.3.1 개 교
- 대학설립 인가 결재자

담당자	과 장	심의관	실 장	차 관	장 관
권진수	안오환	심명섭	이태수	이천수	김숙희

5. 광양대학(학교법인 양남학원)

- 설립 인·허가 경위
 - '91.10.29 광양전문대학 설립계획 승인
 - '92.1.14 학교법인 설립인가
 - '93.11.18 광양전문대학 설립인가
 - '94.3.1 개 교
- 대학설립인가 결재자

담당자	과 장	심의관	국 장	차 관	장 관
김용호	송영식	/	조선제	이천수	오병문

6. 안산산업대학교 [(가칭)학교법인 남양학원]

- 위치 :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남양리
- 경위
 - '97.3.28 학교법인설립허가 신청
 - '97.5.12 학교법인설립허가 신청 철회

7.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94.9.14 : 의예과 정원조정

담당자	과 장	심의관	국 장	차 관	장 관
김화진	김영식	김명곤	이태수	이천수	김숙희

(질의) 이홍하가 설립한 4개 대학의 현장실사 결과보고서 및 조사팀 명단, 결재자 명단 제출

(답변)

-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불임과 같습니다.
 - 불임 1. 대학설립 심사 보고서 1부
 - 2. 대학설립 요건 심사·조사자 명단 1부
 - 3. 대학설립 요건 심사 결과표 결재자 명단 1부. 끝

提出文

1991學年度 開校豫定校에 대한 教育與件 確保程度 등 開校準備狀況을 評價한 結果 本認可與否에 관한 綜合意見을 다음과 같이 報告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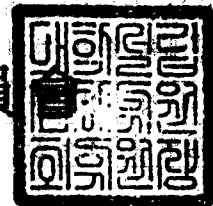
1. 1988年 12月 20日에 計劃承認된 新設豫定大學인 世明大學, 論山大學, 西南工科學大學, 釜山카톨릭大學은 設立認可 履行條件을 모두 確保하고 있으므로 1991學年度에 開校하도록 認可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2. 1989年 10月 28日에 計劃承認된 大學改編豫定 各種學校인 피어선大學, 聖火大學, 大神大學, 순복음大學은 設立認可 履行條件을 모두 確保하고있으므로 1991學年度에 大學으로 改編하여 開校하도록 認可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添附 : 1991學年度 開校 豫定校에 대한 大學設立認可 檢討資料

1990年 7月 24日

大學設立審査委員



文教部長官 貴下

담당자	사무과	과 장	심의관	실 장	일
ㄴ	氣	아	이	이	일

1991學年度 開校 豫定校에 대한
大學設立認可 檢討資料
1990.7.24

大學設立審査委員會
目 次

I. 1991年 開校認可 審査基準

- 1. 新設大學
- 2. 各種學校 大學改編

II. 大學新設認可 審査結果

- 가. 世明大學
- 나. 論山大學
- 다. 西南工科大學
- 라. 釜山가톨릭大學

III. 各種學校 改編認可 審査結果

- 가. 피어선大學
- 나. 聖火大學
- 다. 大神大學
- 라. 순복음神學大學

I. 1991年 開校認可 審査基準

－設立認可 履行條件 確保與否

1. 新設大學(88.12.20 計劃承認)

- 가. 大學設立基準令上的 教員法政定員 確保與否

* 本認可시까지 同基準의 ½以上 確保

○履行條件 確保狀況

區 分	基 準	確 保	備 考
教 員	86名	10名	91.2.28. 까지 43名 確保計劃
職 員	17名	5名	91.2.28. 까지 10名 確保計劃
校 地	60,584m ²	439,763m ²	既確保
校 舍	22,381m ²	16,035m ²	90.11.30. 竣工豫定
體 育 場	13,200m ²	19,800m ²	90.11.30. 竣工豫定
閱 覽 席	320席	320席	90.11.30. 確保豫定
實 驗 設 備	1,201點	610點	91.1.까지 確保豫定
圖 書	50,000券	55,028券	91.1.까지 確保豫定
收 益 財 產	320百萬원	1,084百萬원	既確保

○綜合評價
合格

다. 西南工科大學

○設置學科 및 學生定員 : 10科 400名

* 開校 6個月에 學科當 前任教員 1人 確保

나. 教員法施行令 第46條에 의한 事務職員 確保與否

다. 大學設置基準令 第7條 내지 第12條에 의한 校地, 校舍, 設備, 體育場, 附屬施設, 圖書館 등의 基準以上 確保與否

* 校舍와 附屬施設은 本認可時까지 同 基準의 ½以上 確保하고, 나머지 施設을 確保할 수 있는 經費와 開校에 필요한 經費確保

라. 學校經營財産基準令 및 同施行規則에서 定하는 學校法人收益用 基本財産의 基準以上 確保與否

2. 各種學校 大學改編(89.10.28 計劃承認)

가. 大學設置基準令이 定하는 基準以上 教員의 確保與否

* 開校前까지 70%以上 確保與否

나. 大學設置基準令 第7條 내지 第12條에 의한 校地, 校舍, 設備, 體育場, 附屬施設, 圖書館 등의 基準以上 確保與否

다. 學校經營財産基準令 및 同施設規則에서 定하는 學校法人收益用 基本財産의 基準以上 確保與否

II. 大學新設認可 審査結果

가. 世明大學

○設置學科 및 學生定員 : 10科 400名

(다음 페이지에 계속)

○履行條件 確保狀況

區 分	基 準	確 保	備 考
教 員	98名	11名	91.2.28. 까지 49名 確保計劃
職 員	-	-	-
校 地	77,442m ²	330,712m ²	既確保
校 舍	25,814m ²	23,832m ²	90.9.30. 竣工豫定
體 育 場	13,200m ²	50,000m ²	90.9.30. 竣工豫定
閱 覽 席	320席	320席	既確保
實 驗 設 備	1,020點	530點	91.2.28.까지 確保豫定
圖 書	50,000券	50,000券	既確保
收 益 財 產	320百萬元	402百萬元	既確保

○綜合評價
合格

'95 개교예정 개방대학 현지조사 결과보고

(중경·충남·한려산업대)

1994.10.

담 당	사 무 관	과 장	심 의 관	실 장	결
한	황선호	김	김	이	재

건축사무관 황선호

건축사무관 권영호

교 육 부

(개방대학교육과)

한려산업대

1. 교지(체육장 포함)

○설립계획 승인면적 : 127,777㎡(기준면적 : 80,784㎡)

○확보면적 : 79,060㎡(체육장 7,000㎡ 포함)

○도시계획 시설결정 면적 : 78,095㎡

※확보면적은 79,060㎡로 설립계획승인면적의 61.8%, 기준면적의 97.9%이며, 한편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은 78,095㎡로 설립계획승인면적의 61.1%, 기준면적의 96.7%임.

※설립계획승인면적과 확보면적이 상이한 이유

-현재 이사출연분 1,697㎡에 대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중임.

-광양군 소유토지(50,653㎡)의 매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임.(광양군수 및 서호학원이 사장)

*매매가 결정을 위하여 토지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임.

-개교전까지 총 131,410㎡의 교지를 확보한 후, 향후 이를 학교시설용지에 편입할 계획으로 있음.

※체육장의 정지작업은 90%이상 되었고, 구조물 및 운동장 조성 등 마무리공사가 남아있으나 개교하여 사용하는데는 지장없을 것으로 판단됨.

2. 진입로 개설

○진입로(폭 8m, 길이 278m)를 개설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으며, 표지판 설치 및 교문 주변 정리만 남아 있음.

3. 교사건축

○기준면적 : 38,352㎡

*전문대학 시설기준 적용시 기준면적 : 16,827㎡

○개교전까지 건축계획면적 : 25,259㎡(기준면적의 65.8%)

*총 건축계획면적 : 41,469㎡

○교사 건축공사 진도

-2개 강의동(면적 11,880㎡)은 현재 골조공사, 외벽조적공사를 완료하고 치장벽돌쌓기, 내부벽체 미장, 내부바닥 인조석 작업중에 있으며, 총공정은 55% 정도임.

<실사일 현재 미진공사 내용>

-건축

i) 내부바닥 인조석 및 칸막이

ii) 도장, 문호 등 마감공사

iii) 외부 치장벽돌 마감 일부

iv) 주출입구 문호 및 창호유리공사

v) 화장실 등의 마감공사

-전기

i) 등기구 설치 등 조명 및 전열설비 마감공사

ii) 변전실 등 전기수전 설비공사

-기계

i) 급수 및 위생설비 마감

ii) 소화설비 마감

-토목

i) 건물주변 정리

ii) 배수로 등 구조물 설치공사

○개교전까지 건축면적(기본시설 및 지원시설)의 적정성(확보율)

개교전까지 건축계획면적은 25,259㎡로, 기준면적 38,352㎡의 65.9%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음.

○연도별 건축계획의 적정성

기준면적은 38,352㎡이나, 개교전까지 기준면적의 65.9%인 25,259㎡를 확보하고, '94~'97 총건축계획면적은 41,469㎡로 기준면적은 108.1%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어 적정하게 되어 있음.

4. 종합의견

○진입로는 조성하여 사용중에 있고, 체육장은 90%이상 정지작업이 되어 있어 '95학년도 학생수용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교사 건축공사의 현재진도를 분석해 본 결과 야간공사 등으로 공사추진을 독려할 경우 2개의 강의동(11,880㎡)은 '94년12월말까지 완공하여 입시업무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정계획을 받아보고 그 추진상태를 확인하여 '95학년도 학생수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수위실 47㎡는 미착수상태이나, 11월말에는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한편 2개 강의동(13,332㎡)은 현재 작업진도로 보아 '94년12월말까지 완공은 어려우며, 완공에 5개월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1997학년도 개교예정

대학설립인가 타당성 조사연구

1996.12.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제 출 문

교육부 장관 귀하

귀 부에서 용역의뢰한 "1997년도 개교예정 대학 설립인가 타당성 조사연구"를 완료하고, 그 성과물로 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1996년12월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교수 이 기준

< 목 차 >

서 론

-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 2. 대학설립인가 신청학교 현황
- 3. 연구방법 및 추진일정

'97개교 예정대학 대학설립인가 심사결과
준칙적용 대학 설립기준 심사표

• 칼빈대학(15)	• 중앙승가(25)
• 기독교신학(18)	• 대구예술(28)
• 경일(21)	• 대구신학(31)
• 광신(24)	• 중문의과대학(17)
• 광주여자(27)	• 추계예술(20)
• 영산원불교(30)	• 광주예술(23)
• 을지의과대학(16)	• 한라공과(26)
• 합동신학(19)	• 한국성서(29)
• 한영신학(22)	• 계명산업(32)

설립계획 승인대학(본인가)

대학	대학	• 경동(35) • 제원예술(각종학교)(40)
	개방대학	• 영산산업(47) • 한국산업(53) • 동원산업(59)

전문대학 설립인가(본인가) 심사결과

사립	• 강진공업전문대학(72) • 평송공업전문대학(79) • 성덕전문대학(76) • 동아방송전문대학(82)
공립	• 예천전문대학(85)

건의문

서 론

- 1. 연구배경과 필요성

'90년도 이후 세계화, 정보화에 의한 무한 경쟁시대로 예측되는 21세기를 대비하여 모든 분야에서의 혁신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특히 국가 발전을 위하여는 교육계의 변혁이 필수적인 선

행조건으로 강조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교육개혁위원회와 관계부처 등 정부기관의 주도하에 각급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개혁이 추진 실행되고 있다.

대학설립과 관련하여는 그동안의 대학설립에 따르는 제반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학설립 기준(전문대학 포함)의 최소화로 특성화된 다양한 대학설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계법령의 제·개정이 이루어졌다. 즉, '96.7.26.일자 대통령령 제 15, 127호 대학설립·운영규정과 '96.8.10.일자 교육부령 제685호 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세칙 등이 제정 시행되게 되었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①항에 의하면 교육부장관은 대학을 설립·경영하고자 하는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가 해당기준을 갖추어 대학설립의 인가(국립의 경우에는 개교조치를 말한다)를 신청한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가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동법령 제3조에는 설립주체가 해당규정에 의한 설립기준을 갖추었는지의 확인 등 대학설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9인 이내로 구성된 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두도록 정해져 있으며, 이 위원회의 위원은 대학행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교육계, 교육관련단체, 산업체 기타 각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98.8.9.일자로 9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대학설립심사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대학설립인가 신청대학의 설립타당성을 해당규정에 의해 객관적으로 심의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함으로써 교육부장관이 대학설립승인을 합리적으로 판단·결정할 수 있도록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대학개편>

법 인 명 (설립대표자)	대 학 교 명 (위 치)	대학설립내용 (< >내는 입학정원)	비 고 (설립자 약력 등)
자 유 학 원 (노 진 현)	합동신학 대학원 대학 <각종> (경기도 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교예정일 : '97.3.1. • 학과 : 신학과 • 학생정원 : 240명<80명> 	• '04.8.28
추 계 학 원 (임 형 빈)	추계예술대학 <각종> (서울 북아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교예정일 : '97.3.1. • 학과 : 음악, 미술, 문학 • 학생정원 : 920명<230명> 	• '30.9.24
일 청 학 원 (하 영 수)	경일대학교 <개방> (경북 경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교예정일 : '97.3.1. • 학과 : 공과계열, 인문·사회, 예능 계열, 대학원 • 학생정원 : 6,330명<1,652명> 	• '21.1.6
한 일 학 원 (정 운 태)	한영신학대학 <각종> (서울 구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교예정일 : '97.3.1. • 학과 : 신학, 선교언어, 기독교상담 • 학생정원 : 400명<100명> 	• '34.5.18
하 남 학 원 (오 선 재)	광주예술대학교 <각종> (전남 나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교예정일 : '97.3.1. • 학과 : 디자인, 동양미술음악학과, 무용, 문예창작 • 학생정원 : 1,120명<280명> 	• '47.8.20.
광 신 학 원 (변 한 규)	광신대학교 <각종> (전남 나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교예정일 : '97.3.1. • 학과 : 신학과, 기독교아동, 교회 음악 • 학생정원 : 640명<160명> 	• '34.4.15
승 가 학 원 (송 현 섭)	중앙승가대학 <전문> (서울 안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교예정일 : '97.3.1. • 학과 : 불교, 사회복지 • 학생정원 : 480명<120명> 	• '35.4.15
배 달 학 원 (정 인 영)	한라공과대학 <전문> (강원 원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교예정일 : '97.3.1. • 학과 : 공학계열 • 학생정원 : 960명<24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5.6 • 중앙대 명예경제학 • 한라그룹회장
송 강 학 원 (오 치 석)	광주여자대학교 <전문> (광주 산정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교예정일 : '97.3.1. • 학과 : 인문·사회, 자연과학, 예·체 능 • 학생정원 : 1,640명<410명> 	• '23.10.9
성 령 학 원 (전 영 권)	백제대학교 <각종> (충남 논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교예정일 : '97.3.1. • 학과 : 신학, 기독교교육학, 사회 복지, 유아교육, 행정, 종교음악 • 학생정원 : 1,240명<310명> 	• '36.7.20

3. 연구방법 및 추진일정

과 같이 구성되었으며 동조 ③항에 의거 이
기존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됨.

1) 심사위원회 구성

대학설립·운영규정 제3조②항에 의거 다음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연령)	전 공	현 직	비 고
대 학	이 기준(58)	화학공학	서울대 공대 교수	위 원 장
	박 부 권(48)	교육학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정 재 영(52)	무역학	성균관대 경상대학 교수	
	박 준 서(56)	신학	연세대 신학대학 교수	
개 방 대 학	김 승 현(44)	정치학	서울산업대 조교수	
전 문 대 학	정 완 섭(43)	공업교육학	동양공업전문대학 교수	
산 업 계	임 효 빈(53)	화학공학	대우고등기술연구원 부원장	
관 련 단 체	공 은 배(43)	교육학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조정실장	
공 인 회 계 사	박 성 호(54)	경제학	전국 사립대학 감사협의회회장	

2) 심사방법

(1) 설립계획승인 대학

①서류심사

대학설립계획 승인(가인사)시의 승인조건
과 관계법령에 따르는 법정 기준에 의하여
설립승인신청(본인가)서류를 심의하고 적정
성 여부와 현지 조사시 확인사항 등을 파악
함.

②현지조사

설립계획승인시 계획의 이행여부와 기타
교육여건의 법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함.

③종합

서류심사 결과와 현지조사 결과에 의한
타당성 평가를 근거로 설립승인

'97개교 예정대학 대학설립인가 심사결과

준칙적용 대학 설립기준 심사표

• 칼빈대학(15)	• 중앙승가(25)
• 기독교신학(18)	• 대구예술(28)
• 경일(21)	• 대구신학(31)
• 광신(24)	• 중문외과대학(17)
• 광주여자(27)	• 추계예술(20)
• 영산원불교(30)	• 광주예술(23)
• 을지의과대학(16)	• 한라공과(26)
• 합동신학(19)	• 한국성서(29)
• 한영신학(22)	• 계명산업(32)

설립계획 승인대학(본인가)

대 학	대 학	• 경동(35) • 제원예술(각종학교)(40)
	개 방 대 학	• 영산산업(47) • 한국산업(53) • 동원산업(59)

전문대학 설립인가(본인가) 심사결과

사 립	• 강진공업전문대학(72) • 평송공업전문대학(79) • 성덕전문대학(76) • 동아방송전문대학(82)
공 립	• 예천전문대학(85)

(다음 페이지에 계속)

설립기준 심사표(대학설립·운영규정 제3조 제1항 관련) No. 9

신청내용 (해당 표)	신설	대학 대학원	학교법인	하 남 학원					
	개편	대학 대학원	○	광주예술 대학					
설립기준 심사표	구분		최소기준(A)	확 보(B)	(과부족)	확보율 (B)/(A)	충족 여부	평가금액 (백만원)	
	1	교사	기준(기본 지원) m'	9,800	10,458	(658)	107	충족	/
			연구·부속 (m)	/	(-)	/	/	/	/
			계	m'	/	10,458	/	/	1,527
	2	교 지	m'	19,600	50,763	(31,163)	259	충족	254
	3	교 원	명	54 명	27 명	(△27 명)	50	충족	/
4	수익용기본재산	백만원	5,284	5,300	(16)	100	충족	5,300	
계			/	/	/	/	/	7,081	

수익용기본재산의 내용

(단위 : 백만원)

기준산출 및 확보율 (천원)	재산 확보액	연간소득액	재산총액의5%이상소득계산
①운영수익총액(현재연성년도) 5,684,576	⑤현 금 5,300	609	⑩소득율(⑨/③) 11.5%
②공제액(전입금+기부금) 400,000	⑥상장주식등 -	-	⑪기준액(③×⑤%) 264
③기준액(①-②) 5,284,576	⑦부 동 산 -	-	⑫연간소득(⑨) 609
④확보율(⑧/③) 100 %	계 ⑧ 5,300	⑨ 609	⑬과 부 족 345

심사결과(이행사항 등)

기준충족 (단위 : m/백만원)	
1. 교지(50,763)	2. 교사(10,458.2)
3. 수익용 토지(-)	건물(-)
기본재산 현금(5,300)	주식등(-)
<p>• 설립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됨</p>	

건의문

대학설립인가와 관련된 건의

1. 교육개혁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교육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저희 대학설립심사위원회 9명은 교육부의 위촉으로 지난 수개월간 '대학설립준칙'에 의거하여 학교설립을 신청한 각급대학을 방문하고 실사를 하였습니다.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경험한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교육개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몇가지 점을 아래와 같이 건의합니다.

-건의사항-

1. 대학설립인가의 기본 요건으로서 준칙주의 적용과 운용과정에서 교육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는 방안의 보완이 요망됩니다.
2. 특히, 고급하위과정인 신학대학원 대학을 현행 준칙에 의하여 인가할 경우 대학원의 질적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됩니다. 신학교육 발전을 위해서 적절한 대책이 요망됩니다.
3. 또한 의과대학설립인가에 있어서 대학설립 준칙뿐만이 아니라 의과 대학의 특수성을 감안할 수 있는 보완적인 방안이 요망됩니다.
4. 준칙주의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또는 대학원들의 질적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객관적인 사후 평가제도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94학년도 개교신청

사립전문대학 개교준비사항 점검결과 보고

계	사무관	과장	국장	11월 11일
	나	주	김	원

1. 점검실시

- 일 자 : '93.10.11- 10.16(6일간)
- 대 상 : 9개교(전문대학 8교, 각종학교 1교)
- 사 항 : 교지,진입로 확보상황,교사건축현황, 실험.실습설비 구입계획, 교직원 확보계획,수익용재산 확보 등 종합점검
- 점검자: 전문대학행정과 직원 6명

2. 점검결과

학교별	종합의견	비고
충북공전 (충북음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까지 공사추진상황(교사 90%)과 진입로 확보 및 실험.실습설비,도서,교직원 확보계획 등 준비상태가 충실하므로 '94.3월 개교에 문제점이 없음. ○ 특히, '94년도에 교사 4,912.6㎡를 추가 확충계획으로 설계완료 및 등 소요예산 18억원을 확보하고 있어 교육시설확보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개교가능 ('90계획승인)
군장공전 (전북 옥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공사추진부진(교사 40%)으로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여 12월중 완공할 예정이나 교사본관동 3층 건물중 2층 골조 공사중으로 기온조건을 고려하더라도 공사기일이 촉박한 실정임. ○ 진입로는 확보하였으나 교직원,실험.실습설비 확보계획을 법정기준에 맞게 조정함이 필요함. 	○ 개교 재검토 ('91계획승인)
동아전문 (전남 영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까지의 공사추진상황(교사 70%)과 진입로 확보 및 실험.실습설비,도서,교직원 확보계획 등 준비상태가 충실하므로 '94.3 개교에 문제점이 없음. ○ 특히, '94년도에 교사 4,550㎡를 추가확충 계획으로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있어 교육시설 확보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개교가능 ('91계획승인)

학교별	종합의견	비고
<p>광양제강 (전남 광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까지 공사추진상황(교사 90%)과 진입로 확보 및 실험.실습설비,비품,도서,교직원 확보계획 등 준비상태가 충실하므로 '94.3월 개교에 문제점이 없음. ○ 특히, '94년도에 교사 5,236㎡를 추가확충 계획으로 건축허가까지 완료하고 있어 교육시설 확보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수익용 재산은 추가 확보 조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교가능 ('91계획승인)
<p>안성공전 (경기 안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공사추진상황(교사 75%)과 교직원, 실험.실습설비, 도서 확보계획 등 준비상태가 충실하므로 '94.3개교에 는 문제점이 없음 ○ 학교진입로는 '94.11.30까지 공사중인 국도 완공시 까지 우선 440m 도로와 510m도로 일방통행로로 사용계획으로 문제점이 없음 ○ 교지중 매입 협의중인 미매입 토지는 교사와 2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운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교가능 ('91계획승인)
<p>태성전문 (강원 태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까지의 공사추진상황(교사 60%)과 진입로를 태백 시에서 시공중에 있어 '94.3월 개교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교사건축비(25억원과 추가설계 변경요구 9억원 총소요 34억원)중 일부 미지급(확보재원 20억원), 체육장 조성계획 이행가능성 등 현재까지 개교에 대한 의지 미확정 등에 따른 문제야기 우려 ○ 또한, 실험.실습기자재 및 교직원 확보계획과 수익용 재산확보는 보완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교 재검토 ('92계획승인)
<p>영월공전 (강원 영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까지의 공사추진상황(교사 80%)과 영월군청 진입로 및 상수도 매관공사를 시공중에 있어 '94.3월 개교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학교정문 앞을 통과하는 기존철도 시설공사가 '89.12월에 착공하여 '94.12월 완공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공정은 80% 정도로서 철도청 및 영월군청이 등 시설공사 완료전까지는 학교정문에 1층 철도건널목을 설치할 예정이므로 통학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실습기자재 및 교직원 확보계획과 수익용재산 확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93.12까지 매수완료 예정인 미매입 토지는 교육운영에 직접적인 영향 및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교가능 ('91계획승인)

학교별	종합 의견	비고
<p>천안의국어 (충남 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까지 공사추진상황(교사 95%)과 진입로 확보 및 실험·실습설비, 도서 및 교직원 확보계획 등 준비상태가 충실하므로 '94.3월 개교에 문제점이 없음. ○ 특히, '94년도에 도서관 등 3,951㎡를 추가확보 계획으로 13억원은 확보하고 있어 교육시설 확보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교수 채용계획을 법정기준에 맞게 조정함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교가능 ('92계획승인)
<p>부산예술학교 (부산 남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까지 공사추진상황(교사 80%)과 진입로 확보등을 고려할때 '94.3 개교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학교 진입로 공사를 위한 도시고속도로 지하터널공사가 난공사인 관계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학교개교를 위한 공정기한까지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실습기자재, 교직원 확보계획 및 수익용 기본재산은 보완조치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교가능 ('91계획승인)

3. 향후 조치계획

가. 개교 가능교 :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조정 의견 조사

○ 조정사유

- '96 설립예고 요건 및 자체운영기반 조기 확충 고려
- '94 전문대학 학생 정원 조정시 예정인원(8교 5,120명) 감안

○ 조정방안

- 조정대상 : 시설확보상황 및 계획에 의한 수용인원을 감안하여, '94까지 교사 9,000㎡이상, 체육장 6,000㎡이상 확보 가능교
- 조정기준 : 학교별 8학과 640명(학과당 80명)이내로 조정
- 조정분야 : '94학년도 정원 조정 방침에 의한 증원 분야
(공업, 외국어, 여성관련 및 야간학과 우선; 수도권은 야간)

- 조정계획

구 분	교사 시설 확보(㎡)			정 원 조 정			비 고
	'93	'94	계	당 초	조 정	증 원	
충북공전	4,894	4,914	9,808	480	640	160	수도권
군장공전	8,160	-	8,160	400	400	-	
동아전문	14,557	4,550	19,107	360	640	280	
광양계강	9,155	5,236	14,391	480	640	160	
안성공전	9,794	-	9,794	480	640	160	
태성전문	7,117	-	7,117	400	400	-	
영월공전	6,780	-	6,780	400	400	-	
천안외국어	11,017	3,951	14,968	480	640	160	
소 계				3,480	4,400	920	
부산예술 학교	11,596	-	11,596	480	480	-	체육장부족

※ '94계획은 건축허가, 설계완료, 자원확보분만 포함.

나. 개교 재검토교에 개교연기 의견문의(군장공전, 태성전문)

4. 향후 추진일정

'93.11.10 학교별 정원조정 및 설립 의견조사

'93.11.20 학교 설립 인가

첨부 : 출장복명서 9교분.

전문대학 개교준비사항 점검표

학교명: 평양제강전문대학

1. 개교업무 추진현황



항 목	법정기준	계획승인	확 보	검토	추진현황
1. 교지 확보 ◦ 교 지 (㎡) ◦ 체육장 (㎡) ◦ 진입로 (M)	30,633 (6,000) -	55,973 - -	55,973 (6,000) 110	◦	◦ 진입로 : 기 확보 (양남교 준공) * 경전선 철도위 횡단 육교 가설 예정
2. 교사건축 (㎡) ◦ 기본시설 ◦ 지원시설	10,211 8,838 1,373	10,120 8,744 1,376	9,155 8,060 1,095	◦	* 교사건축 진척도 90% ◦ 건물개요 -1동 : 지상5층 (강의.실습동) -2동 : 지상4층 (강의.실습동) -3동 : 지상1층 (수위실) * 4동 5,236㎡(지상4층) 은 건축허가('93.10) 되어 '94.10 완공 예정
3. 실험.실습 설비구입(백만원)	985	-	956	◦	◦ 본인가와 동시 계약할 준비가 완료된 상태임.
4. 교직원 확보(명) ◦ 학장 ◦ 교수 ◦ 사무직원 ◦ 조교	1 30 12 6	- - - -	1 - (27) 7 4(2)	◦	()는 '94.2까지 추가 확보계획
5. 수익용재산 (백만원)	144	754	250	×	

* 교지면적에는 체육장 면적 포함, 검토는 개교여부 판단임.

II. 교지 및 교사시설, 진입로사진 : 별첨

III. 종합의견

- 현재까지 공사추진상황(교사 90%)과 진입로 확보 및 실험·실습설비, 비품, 도서, 교직원 확보계획 등 준비상태가 충실하므로 '94.3월 개교에 문제점이 없음.
- 특히, '94년도에 교사 5,236㎡를 추가확충 계획으로 건축허가까지 완료하고 있어 교육시설 확보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수익용 재산은 추가 확보조치 필요.

점 검 자 행정사무관 성명 김 용 호 
 행정주사 성명 구 영 창 

대학설립 요건 심사·조사자 명단

서남대학교

○ 대학설립심사위원회 구성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자 문 위 원	김 종 철	중앙교육심의회 위원	학 계
	하 두 봉	서울대 교수	"
	장 인 숙	전 대학교육협의회	"
	박 문 회	걸스카우트연맹 총재	여 성 계
	김 선 홍	기아산업 회장	산 업 계
	정 보 성	변호사	법 조 계
실 무 위 원	김 신 복	서울대 교수	
	박 종 열	경북대 교수	
	이 정 식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박 성 호	회계사	

광주예술대학교

○ 대학설립심사위원회 구성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대 학	이 기 준	서울대 교수	위 원 장
	박 부 권	동국대 교수	
	정 재 영	성균관대 교수	
	박 준 서	연세대 교수	
개 방 대 학	김 승 현	서울산업대 교수	
전 문 대 학	정 완 섭	동양공업전문대학 교수	
산 업 계	임 효 빈	대우고등기술연구원 부원장	
관 련 단 체	공 은 배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조정실장	
공 인 회 계 사	박 성 호	전국사립대학 감사협의회 회장	

한려대학교

○ 교육부 심사

직	성 명	소 속	비 고
5 급	권 진 수	교육부(개방대교육과)	대학설립예고제로 인가조 건 사전 검토·조사
6 급	최 홍 순	"	
5 급	권 영 춘	교육부(대학시설지원과)	

광양대학(전. 광양제강전문대학)

○ 교육부 심사

직	성 명	소 속	비 고
6급	구 영 창	교육부(전문대학행정과)	
5급	김 용 호	교육부(전문대학행정과)	

대학설립 요건 심사 결과표 결재자 명단

학 교 명	결 재				비 고
	담 당	과 장	심 의 관	실장(국장)	
서남대학교	이영찬	정형진	송봉섭	이천수	
광주예술대	맹정호	정석구	조성중	장오현	
한려대	권진수	안오환	심명섭	이태수	산업대
광양대	김용호	송영식		조선제	전문대

대학설립 요건 심사·조사자 명단

□서남대학교

○대학설립심사위원회 구성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자문위원	김종철	중앙교육심의회 위원	학 계
	하두봉	서울대 교수	"
	장인숙	전. 대학교육협의회	"
	박문희	걸스카우트연맹 총재	여 성 계
	김선홍	기아산업 회장	산 업 계
	정보성	변호사	법 조 계
실무위원	김신복	서울대 교수	
	박종열	경북대 교수	
	이정식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박성호	회계사	

□광주예술대학교

○대학설립심사위원회 구성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대 학	이기준	서울대 교수	위 원 장
	박부권	동국대 교수	
	정재영	성균관대 교수	
	박준서	연세대 교수	
개 방 대 학	김승현	서울산업대 교수	
전 문 대 학	정완섭	동양공업전문대학 교수	
산 업 계	임효빈	대우고등기술연구원 부원장	
관 련 단 체	공은배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조정실장	
공 인 회 계 사	박성호	전국사립대학 감사협의회 회장	

한려대학교
○교육부 심사

직	성명	소속	비고
5급	권진수	교육부(개방대교육과)	대학설립예고제로 인가조 건 사전 검토·조사
6급	최홍순	"	
5급	권영춘	교육부(대학시설지원과)	

광양대학(전. 광양제강전문대학)
○교육부 심사

직	성명	소속	비고
6급	구영창	교육부(전문대학행정과)	
5급	김용호	교육부(전문대학행정과)	

대학설립 요건 심사 결과표 결재자 명단

학교명	결재				비고
	담당	과장	심의관	실장(국장)	
서남대학교	이영찬	정형진	송봉섭	이천수	
광주예술대	맹정호	정석구	조성중	장오현	
한려대	권진수	안오환	심명섭	이태수	산업대
광양대	김용호	송영식		조선제	전문대

(질의) 한려대에 대한 '98년6월 조사반은 교수협의회가 자체 조사한 국고지원금 유용을 확인요청하였으나 조사하지 않았고, 법인 및 회계관련 서류를 하루동안 지켜주는 등 비리재단을 비호한 일이 있는데, 실태조사반 명단은?

- (답변)
- '98.6 한려대에 대한 조사시 교수협의회가 국고지원금 유용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함에 따라, 동 법인측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회계관련 서류가 검찰에 압수되어 조사를 할 수 없었으며,
 - 동 법인 관련 서류를 지켜주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우리 부 실태조사반이 동 대학에도 착했을 때, 동 대학 학생들이 건물을 점거한 상태로 법인 및 회계관련 서류는 이미 학교 밖으로 반출되어 있었고 학사관련 서류도 학생들이 점유하여 조사자체가 불가능하였습니다.
 - 이에 실태조사반은 총장, 교수협의회장, 총학생

- 회장을 불러 조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였고, 동 회의에서 3자가 외부로 반출되었던 법인 및 회계관련 서류는 조사후에도 외부로 반출할 수 있음을 약속하는 합의를 하였음에도 조사 마지막 날 교수협의회 및 총학생회측이 법인 및 회계관련 서류의 반출을 막았습니다.
- 조사반은 동 사태를 학술연구지원국장에게 보고한 결과 3자가 합의한 법인 및 회계관련 서류의 반출 약속은 지켜주라는 지시를 받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교수협의회장과 동 국장의 통화를 주선하고 국장이 약속이행을 당부했음에도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가 약속을 지켜주지 않아 발생한 사건입니다.
 - 실태조사반 명단 : 이성희, 송지광, 유영철, 강성호, 김규호

(질의) 이홍하는 한려대의 폐쇄제고조치가 철회될 경우에는 한려대를 통해, 폐쇄가 될 경우에는 광양대를 통해 학생 등록금으로 만든 학교재산에 대한 운영권을 계속 유지하게

되어 이는 특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

- 한려대의 폐쇄여부는 향후 실태조사 및 청문회 등을 거쳐 폐쇄제고 사유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판단하여 결정할 예정이며,
- 이홍하는 현재 한려대의 경영에 간여하고 있지 않으며, 학교폐쇄시 동교의 재산처리 문제는 교육부장관 승인단계에서 신중하게 처리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이홍하가 설립한 모든 대학의 현 이사진을 퇴진시키고 임시이사를 파견할 용의는?

(답변)

- 이홍하가 설립한 모든 대학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며,
- 그 중, 한려대에 대하여는 현지실태조사후 폐쇄조치 여부와 임시이사 파견문제를 연계하여 신중하게 검토, 처리할 계획입니다.

(질의) 한려대에 대해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폐쇄, 합병, 학교재생 여부를 결정하게 할 용의는?

(답변)

- 한려대에 대한 임시이사 파견여부는 향후 동교에 대한 현지실사후 학교폐쇄조치 여부와 연계하여 판단하겠습니다.

(질의) 사학마피아의 표본인 이홍하를 일벌백계주의로 다스려야 제2, 제3의 '학교사기단'이 출현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

-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사업을 진정한 육성자적 양심에서 바탕을 두고 하지 않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재산증식 수단으로 운영하는 것은 사회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 우리 부도 이를 위해 '사학분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李在五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 분규대학에 대한 장관의 해결의지는?

(답변)

- 사학분규의 원인 등도 복잡하지만, 교육부에서도 잘 대응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 분규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적극적인 의

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분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朴範珍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 한국의국어대학에 보낸 고문직 시정 공문사본을 제출할 것

(답변)

- 고문직 시정을 요구한 교육부의 공문사본은 불임과 같습니다.

불임 : 시정공문 사본 3매.

교 육 부

우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1가 77-6 / 전화720-3330 / FAX 739-9308
 대학행정지원과 과장 김효겸 사무관 이성희 담당자 유영철

문서번호 대행 07000 - 140
 시행일자 1999. 6. 24. (년)
 (경 유)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각계 부장님 단원에 대한 시정요구 이행 촉구

취급		장 관
보존		김효겸
국 장	전 결	
과 장	김효겸	
사무관	이성희	
기안	유영철	협조

1. 관련 : 대학 81423-367('99. 3.17) 및 대학 ~~07000~~⁸¹⁴²³-596('99. 5.11)

2. 정관규정에 없는 직제(고문 및 보좌역)를 운영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귀 법인(대학)에 대하여 2차에 걸쳐 시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촉구하오니 '99. 7. 7까지 기일을 엄수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교 육 부 장 관

전결 고등교육지원국장 김용현

수신처 학교법인동원육영회 이사장, 한국외국어대 총장

교 육 부

우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1가 77-6 / 전화720-3330 / FAX 739-9308
대학지원과 과장 김효겸 사무관 이성희 담당자 유영철

문서번호 대학 81423 - 596
시행일자 1999. 5. // . (년)
(경 유)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취급		장 관
보존		정상환
국 장	전 결	
과 장	김효겸	협조
사무관	이성희	
기안	유영철	

제 목 민원사안 조사결과 재시정 요구

1. 관련 : 대학 07000-1931('98.12.31), 동원 223('99. 1.11), 대학 81423-367('99. 3.17) 및 동원 13('99. 3.31)

2. 귀 법인이 제출한 민원사안 조사결과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정관규정에 없는 직제(고문 및 보좌역)를 운영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사립 학교법 제70조의2와 귀 법인 정관 제89조 및 제90조 내지 제96조에 위배되어 이를 재시정 요구하니,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교 육 부 장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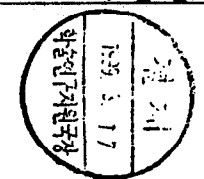
전결 학술연구지원국장 정상환

수신처 학교법인동원육영회 이사장, 한국외국어대 총장

교 육 부

우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1가 77-6 / 전화720-3330 / FAX 739-9308
 대학지원과 과장 김효겸 사무관 이성희 담당자 유영철

문서번호 대학 81423 - 367
 시행일자 1999. 3. 17. (년)
 (경 유)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민원사안 조사결과 시정지시

취급		장 관
보존		3/17
국 장	전 결	정상환
과 장	김효겸	
사무관	이성희	
기 안	유영철	
		협조

1. 관련 : 대학 07000-1931('98. 12. 31), 동원 223('99. 1. 11)

2. 귀 법인 및 한국외국어대학교와 관련된 민원사안에 대한 서면조사 결과 사립학교법과 귀 법인정관등에 위배된 사항이 있어 불임과 같이 시정지시하니, '99. 3. 31까지 시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불 임 민원 조사결과 시정지시사항(2건) 1부



교 육 부 장 관

전결 학술연구지원국장 정상환

수신처 학교법인동원육영회 이사장, 한국외국어대 총장

(질의) 덕성여자대학교의 '교원인사조정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데, 교육부의 견해는?

(답변)

○교원인사위원회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의거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교원인사조정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하여는 규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해 대학 내부시행세칙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기능면에서 교원인사위원회와 중복되는지 여부와 위법성 등을 심층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申樂均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 중부학원 이보연 이사장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법원 판결전이라도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동 법인의 이사장 등에 대해서는 우리 부 감사결과 교원신규임용시 금품을 수수한 개연성이 높아 수사의뢰하여 검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혐의의 개연성을 가지고라도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만, 임원취임승인취소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에서 그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해 놓고 있기때문에, 명백한 사립학교법 위반사실이 나와야 취임승인 취소가 가능하므로 수사결과에 따라 취임승인 취소 등을 포함한 대책을 검토 하겠습니다.

(질의) 교육부가 박원국 전 이사장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당시 계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처분을 내린 이유를 밝히고 박이사장이 복귀했을 경우 입장은?

(답변)

○교육부는 동 법인에 대하여 '97.6.9부터 6.19까지 감사를 실시하고, 박원국 전 이사장의 학사행정에의 제도적·관행적 간섭 등 사립학교법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97.7.14부터 '97.10.2까지 6차에 걸쳐 이를 시정요구 했습니다.
○그러므로 동인에 대한 우리 부의 시정요구조치는 '97.10.2 처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동인이 '97.10.8 제출한 종합시정방안을 시정요구에 대한 이행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97.10.10자로 취임승인취소조치를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우리 부는 시정조치 요구

시점을 '97.7.14부터 요구한 것으로 판단함과 동시에 동인이 우리 부의 종합시정방안을 이행치 않았다고 판단하여 '99.9.6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박원국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복귀할 경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것입니다.

(질의) 중부대학교의 신규교원임용채용과 관련 금품공여 교수에 대한 조치대책은?

(답변)

○'99.9.8~9.14까지 중부대학교에 대한 감사실시결과 교원신규채용관련 금품수수의혹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이사장 등 6명을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지검에서는 이사장 등 6명 및 금품공여 의혹이 있는 교수들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으며, 수사결과 교원으로 신규임용될 때 금품을 공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안에 따라 징계 등 행정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질의) 한려대에 대한 종합정상화 방안이 따르면 한려대 폐쇄시 동교의 재산을 광양대에 귀속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학생 등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우선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학교정상화, 재산처리 등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

○한려대에 대한 임시이사 파견여부는 향후 동교에 대한 현지실사후 학교폐쇄 조치여부 결정과 연계하여 판단하겠습니다.
○한려대 폐쇄조치시 잔여재산을 광양대로 귀속시키는 문제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는 경우 학생 등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가 있으므로 잔여재산의 처리에 대한 교육부장관 승인 단계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질의) 교육부가 한려대 인가후 지도·감독을 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한려대 설립인가 후,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3월 1일자의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해 보고를 받아 왔습니다.
○보고를 받은 결과 대학설립인가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97년부터 '99년까지 국고지원 중단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98.6.8~13 동교에 대한 교수협의회 등의 민원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학설립인가조

건 미이행 사항 등을 확인하여 학교폐쇄제고 및 학생모집정지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질의) 지난해 한려대 실태조사를 한 뒤 서북영 총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는데 이는 이행되었는가?

(답변)

○한려대 서북영 총장에 대해서는 '98.7.31 동교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비 회계처리 부당 등으로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으며, 동 법원에서 동인에 대한 징직 1개월('98.8.10~'98.9.9) 간의 처분결과를 보고해 온 바 있습니다.

(질의) 한려대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후 실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

○국고보조금 지원은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실험실습비 등 교육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지원하고, 대학에서 보고되는 집행결과를 가지고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모든 대학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95-'96년도에는 현장확인을 하지 못했으며 대학에서 보고된 집행결과에 의하여 정산하였습니다.

(질의) 한려대 학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현재 소송의 진행상황은?

(답변)

○'99.5.10 한려대 학생(졸업생 포함) 김도일의 36명이 국가, 이홍하, 서북영, 서호학원을 상대로 1인당 각 700만원씩 총 2억5,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제기하여 진행중이며,
○동 소송제기자중 15명이 소 취하를 하여 현재 소송제기자는 22명입니다.

(질의) 유죄가 확정된 이홍하의 횡령액을 환수할 구체적인 방안은?

(답변)

○이홍하가 횡령한 부분에 대하여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추정금의 명시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정금의 명시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에서 추정 여부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변호사의

법적자문을 받아 구체적으로 환수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薛勳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 대학들의 잘못된 관행을 쇠신하기 위해서는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등 교육부가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견해는?

(답변)

○국민의 정부출범 이후 교육부에서는 사학의 잘못된 관행을 쇠신시키기 위하여 학내분규가 발생된 한국외대, 서원대, 단국대 등에 임시이사를 선임하였고, 부실사학의 경우는 학교를 폐쇄시키기 위해 폐쇄제고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에서는 대학의 비리·분규 등 잘못된 관행을 쇠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질의) 김문기씨가 상지대 설립당시 기부했다고 주장하는 우산동 660번지 등 총6만2,092평과 종합대학 승격시 우산동 산 663의 1번지 등 2만9,416평은 등기부등본상에 증여 또는 기부라고 표기되어야 함에도 2필지만 증여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매매로 나타나 있는데, 역설적으로 말해서 김문기씨가 법인으로부터 매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으로 이것은 김문기씨가 재산을 기부했다는 것이 허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답변)

○상지대 설립관계서류는 정부문서보존기록소에 이관되어 교육부는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당사자인 김문기씨가 직접 소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격상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설립당시 재산을 출연한 김문기씨로 하여금 위원님께 직접 제출·소명토록 하겠습니다.

(李榮一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 7월29일 상지대학교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재단을 원 설립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물의를 일으키고 물러난 설립자가 복귀해야 한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실이 아니라면) 김문기씨는 교육부장관의 입을 빌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인데 한 나라의 교육정책을 책임지

는 사람으로써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
입니까?

(답변)

- 지난 7.29 교육부장관실에서 이상희 이사장, 김찬국 총장, 김문기 현이사장을 초치하여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상지대 정상화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만약 김문기가 그러한 말을 했다면 본인의 말을 잘못 이해하였거나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말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 장관께서는 상지대학교 임시이사 교체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임시이사진 교체는 학내 구성원의 의견과 지역 사회의 여론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학분쟁처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매우 신중하게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의) 대구대 임시이사 체제를 정이사 체제로
바꾸는 것에 있어서 현행 임시이사가 정이
사가 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99.8.31자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25조제4항에 의거 동 법인의 임시이사는 동 법인의 정이사(사립학교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로 선임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그리스도신학대학의 학내 분규로 이사장
은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고, 총장에 대해서
는 징계절차가 이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교육부장관께서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그리스도신학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어떤 해
결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동 대학을 유지·경영하는 법인은 종교재단에서 설립한 법인이어서 교명변경과 관련하여 이사간의 상호 입장차이로 분규가 발생한 점 등 종교적인 특성이 있으며 아울러 법인 재산 운용과 관련한 비리문제로 검찰에서 수사중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동 대학의 바람직한 해결방법은 이해당사자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사태해결을 위한 양측의 노력이 없고 계속

분규가 지속될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감사
결과에 따라 임시이사진 선임 여부를 검토하겠
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

○ 현 경문대학 재단은 학교운영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판단되는 바, 현재의 이사진을 전면
개편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답변)

- 전재욱과 관련하여서는 학교비로 공장부지를 부당매입하는 등 몇 가지 문제가 적발되어 동 부지를 즉시 매각하여 교비로 환수토록 조치한 바 있으나,
- 이 사실만으로 다른 임원까지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사태 진전 상황에 따라 임원취임승인 취소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임시이사 선임을 통한 대학정상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사립학교법 제25조 (임시이사의 선임)

-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당해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선임.

<중부대학교>

(질의) 현 이사진이 학교를 경영할 능력과 자세가 되어 있다고 보는지 교육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우리 부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는 대로 그 내용을 토대로 하여 종합 판단하겠습니다.

<중부대학교>

(질의) 사립대 비리의 문제는 사립대에 주인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다고 보다는 사립대의 주인들이 도덕성과 교육이념은 상실한 채 사학을 개인소유의 자산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사학비리에 대한 위원님의 견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학교법인은 교육을 위하여 출연된 공익재산이므로 개인 소유의 자산이 될 수 없습니다.

<중부대학교>

(질의) 과거 사립대를 운영하다 비리 등으로 물러난 사람이 다시 사학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규제해야 학원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교육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 과거에 사학비리나 부정 등과 관련없고 사회적으로 덕망이나 신망을 받는 주요인사가 사학 운영을 맡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사학비리와 관련된 인사는 일시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립학교법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는 도덕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인사는 학교운영과 관련되는 이해 당사자들의 여론과 검증에 의해 이사진에서 배제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덕성여자대학교>

(질의) 교육부 감사결과 학사행정 간섭과 총장 권한 침해 등의 문제로 이사장 취임승인이 취소된 박원국 전 덕성학원 이사장이 다시 학교로 복귀를 시도하려 한다는 것은 학교를 혼란시킬 뿐 아니라, 교육적 차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이는 자격이 없는 주인이 주인 행세를 하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견해는?

(답변)

- 기본적으로 학교법인은 교육을 위하여 출연된 공익재산이므로 개인소유의 자산이 될 수 없습니다.
- 박원국 전 이사장은 우리 부가 취한 임원취임승인 취소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재판결과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질의) 한려대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일인의 학교소유 제한과 같은 제도를 만들 방안은?

(답변)

- 한려대와 같이 한사람이 여러개의 대학을 설립 운영하는 문제는 대학의 설립운영을 진정한 교육자적 욕망 양심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는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견에 대하여 건전한 사학운영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부도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 다만, 한사람이 여러개의 대학을 사실상 설립·운영할 때 제3자의 이름으로 운영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사전에 검증해내느냐 하는 문제와 이를 제한하는 것이 사학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겠습니다.

(질의) 한려대에 대한 교수협의회 등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지않고 실태조사만을 실시한 이유는?

(답변)

- 한려대의 학교운영상황은 이홍하가 구속되면서 검찰의 수사결과를 통하여 공금횡령 등 상당 부분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 동교에 대한 실태조사는 '98.6.8~6.13일까지 교수협의회 등의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동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학교폐쇄계고 및 학생 모집정지 조치를 하였으며, 동 실태조사시 민원사항에 제시된 사항을 대부분 조사하였습니다.

(질의) 한려대에 임시이사를 1년이나 2년전에 파견했다면 폐쇄계고까지 안갔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

- '98.7.31 동교에 대한 학교폐쇄계고 조치는 '97.4.30 동교 설립자 이홍하의 공금횡령혐의로 구속된 이후, 학교정상화를 수회에 걸쳐 촉구하였으나 정상화되지 못하였으며,
- 1년뒤인 '98.6.8-6.13 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학교폐쇄계고 조치를 예고하였습니다.
-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그러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실태조사 후 학교폐쇄조치 여부와 임시이사진 파견문제는 서로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질의) 한려대 설립인가에서 관리감독 소홀, 문제발생후 해결노력 미흡 등 교육부의 잘못으로 학생, 교수,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에 대한 피해보전 대책은?

(답변)

- 앞으로 대학설립인가 기준을 강화하여 선의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으며,
- 현재, 이에 대한 정책연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제도개선시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려대가 폐쇄될 경우,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학생이 졸업하는 2003.3월까지 학교를 존치시킬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임시정원으로 타대학에 편·입학 조치를 취할 것이며, 교원에 대해서는 타 사립대의 교원 신규채용시 우선 임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국어대학교>

(질의) 교육부 장관은 한국의대가 안정을 찾고 발전해나가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학내 구성원, 동문, 설립자 등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학원정상화 방안을 논의하여 합의결과를 도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경우 교육부에서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한국의국어대학교>

(질의) 사립대학교에 주인이 있어야 한다는 근거로 전 재단측 이사가 정이사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는데, 임시이사가 정이사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임시이사체제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그러므로 정이사체제로 전환하여 대학이 빠른 시일내에 안정되는 일이 바람직하지만
- 정이사 체제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학내 구성원들 간의 갈등, 이해관계가 원만하게 해소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金日柱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 임시이사 파견시 전문가가 선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

- 위원님의 고견과 뜻을 같이하며 앞으로 임시이사 선임시 깊이 고려하겠습니다.

(질의) 대학사태에 외부의 비호세력이 차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답변)

- 대학의 문제는 대학의 자율능력에 의해 교육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외부의 세력이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분규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코자 합니다.

(질의) 중부대학교의 신규교원 채용과 관련 금품수수 비리에 대한 대책은?

(답변)

- 검찰 수사 결과 교원채용관련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되면 대학 행·재정 제재 조치와 아울러 관련자에게는 징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아울러 교육부에서는 교원임용의 투명성·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공무원법('99.1.29, 법률 제5,717호)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99.9.30, 대통령령 제16,564호) 개정내용이 엄정히 집행되었는지를 철저히 사후관리하겠습니다.

(金許男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 사립대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교육부에서 법대로 안하기 때문에 생기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변)

- 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앞으로는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